

『2026년 스포츠산업 사회적기업전담센터』

[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

스포츠산업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2026년 스포츠산업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사회적기업전담센터 기관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스포츠산업분야 창업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원대상:**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기업 중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하거나 필요한 기업
- 지원규모:** 총 15개사

사회적기업전담센터	서원대학교
지원규모*	전국 15개사(비수도권 50% 이상 선발)

* 모집규모 미달시 변동 가능

- 지원기간:** 2026.4~12월(약 9개월)

지원내용

- ① 사업화지원금 **최소 3,500만원~최대 6,500만원(평균 5,000만원)**

※ 선정기업은 사업화지원금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시 자기부담금 선집행

※ 사업화지원금 사용가능 비목 및 유의사항 등은 [붙임2] 참고

- ② 사회적기업전담센터를 통한 창업 교육 및 보육 특화프로그램 제공

※ 창업지원센터별 특화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붙임3] 참고

2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 자격요건 부합 시 문체부 예비 사회적기업 우선 선정

①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을 하지 않은 자**

- 기존 사업자번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스포츠산업과 관련이 없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인 경우 예비창업자로 신청 가능. **다만, 예비창업자로 지원 시 선정 후 협약기간 내 스포츠산업 창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이종업종에 대한 판단은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별 판단 예정

②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업력 7년 미만인 자

- 업력기준: **2019년 3월 10일(포함) 이후 창업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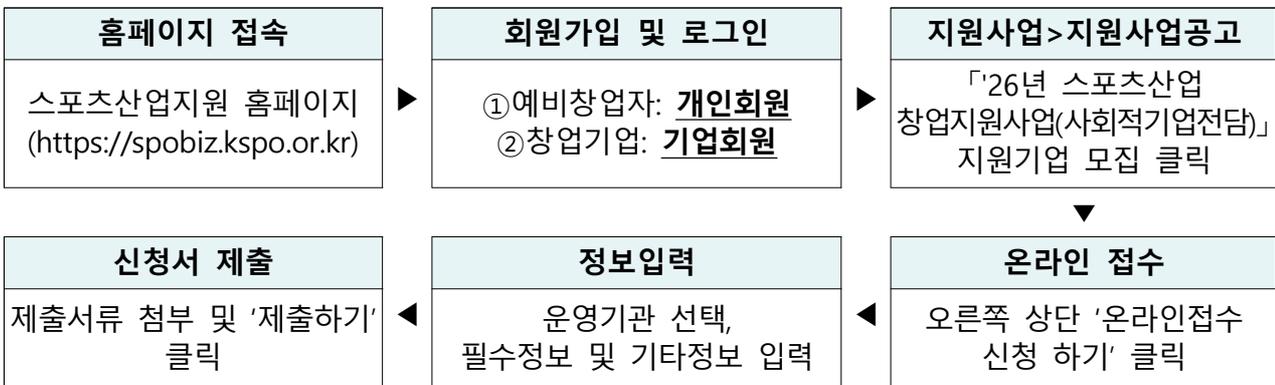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6년 3월 9일(월)~3월 24일(화), 16:00까지**

* 16:00 정각 전 제출완료 필수

○ (신청방법) 스포츠산업지원(<https://spobiz.kspo.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 후 보완방법: 마이페이지 > 지원신청 현황 > 접수한 공고 클릭 > 보완하기 및 보완 사유 입력 > 접수한 공고 재클릭 > 서류보완 및 제출하기 클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공통(신청서)	①사업신청서 1부(서명) ②사업계획서 1부(1. 창업아이템 개요 파트부터 10페이지 이내) ③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동의 및 서명) ④신청서에 작성된 수상내역, 경력사항, 가점 등 해당 관련 기타 증빙서류	○신청서 서명 ○10페이지 미준수시 감점가능 ○동의 및 서명확인 ○증빙 미제출시 불이익 가능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로 필히 업로드

- 서류평가 합격시 추가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예비창업자로서 지원 시	창업이력 ○	창업후 폐업	①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1부	○폐업한 사업체가 스포츠 관련인 경우도 지원가능
		스포츠 미관련 창업	①사업자등록증 1부 ②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1부	○스포츠관련 창업 여부 확인용
	창업이력 X	①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확인서 1부	○창업이력 확인용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지원 시		①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②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③2025년 12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④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1부 ⑤해당시 (여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증빙서류		

○ (문의처)

사회적기업전담센터	모집규모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서원대학교	15개사	043-716-2985	sw_sports@naver.com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업지원팀 02-410-1757/1753

<신청 및 접수 참고사항>

- 반드시 지원받고자 하는 본인 및 해당 사업자로 회원가입, 지원사업 신청 필수
- 자격요건 부합 시 타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선정 시 최종 1개 지원사업만 선택
-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스포비즈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보완하기 포함)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마감시간 정각에 맞추어 제출 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소 10분 전 신청(보완하기 포함)완료 권장하며, 마감시간 임박시 시스템 에러 등의 사유로 미 접수시 접수 불가능 양지**

3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평가방식)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및 최종선정
- (평가위원) 센터별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항목) 사업역량 및 계획 등을 평가하며 센터별 자율지표 추가 가능

<서류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사업역량	보유 역량, 참여의지, 개발동기	15
사업계획	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네트워크 확보계획 (투자, 거래처, 전문가 등)	40
사업모델	아이템 및 기술차별성, 시장 진입·선도·확대 가능성 수익 및 고용창출가능성 등	30
기대효과	스포츠산업 분야 성장가능성 및 파급효과	15
합 계		100

<발표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사업역량	경영진의 보유역량, 사업화 의지, 개발동기	15
사업모델	아이템 및 기술차별성 및 구현가능성, 시장 진입·선도·확대 가능성, 수익 및 고용창출가능성	30
성장전략	자금조달 계획, 대내외 협력방안	20
성장가능성	BM확장성, 투자유치, 성장·글로벌 진출 가능성	20
기대효과	스포츠산업 분야 성장가능성 및 파급효과	15
합 계		100

- ※ 1차 서류평가 시 최종 선정기업수의 2배수 선정(접수기업이 2배수 미달 시 전체 발표)
-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모두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필요한 경우 운영기준에 반하지 않는 내에서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서류평가 가점항목

- '24년·'2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결선진출 장려상(3등) 2팀 서류면제 (1회에 한함)
- 최근 3년 이내 SKL에 만 2년 이상 입주한 기업(졸업기업 포함) 3점
- 우수 스포츠용품 선정 기업(3점)

※ **우선선정 대상자** * 서류 및 발표평가 면제

- '24년·'2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결선진출 최우수상(1등) 1팀, 우수상(2등) 2팀 (1회에 한함)
- '25년 스포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우수수료기업(1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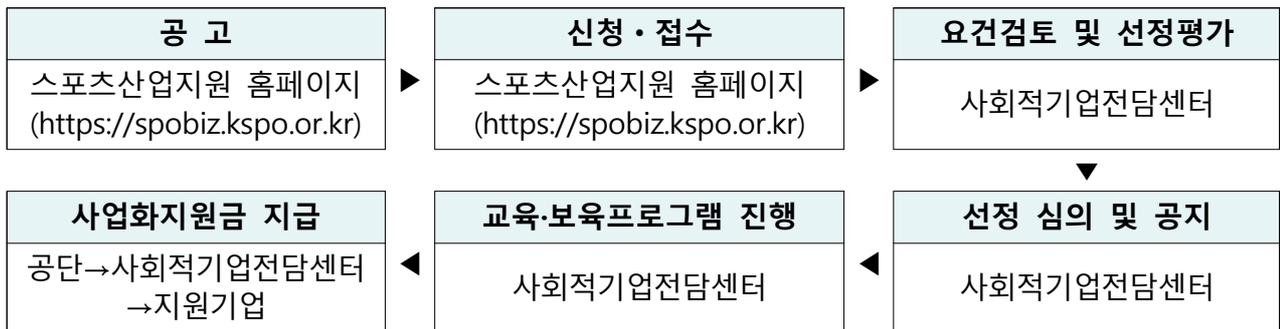
□ **평가일정** ※ 하기 일정은 운영기관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서류평가) ~'26.4.3(금) 예정
- (발표평가) '26.4.6(월)~13(월) 예정
- (최종선정) '26.4.24(금) 예정

※ 각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결과 안내(이메일 등) 예정

4 기타 안내

□ **세부 추진절차**



□ **유의사항**

- 중소기업부 등 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및 이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회적기업지원사업을 수료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2026년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1]

※ 선정 완료 후 타 부처의 창업지원 사업에 신청/선발 지원 가능(단, 해당 부처의 창업지원 사업이 중복수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같은 항목에 대한 중복수혜는 불가)

- 사업화지원금을 제공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타 기업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자격요건 부합 시 여러 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은 1개 사업만 가능하므로 되도록 1개 사업에 신청 권장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이의제기는 최종 선정결과 안내 후 1회에 한해 창업센터에 제기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지침·기준 및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 의무사항

- 선정자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진행하는 교육·보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야 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 재정경제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붙임1] 중복수혜 불가 정부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 창업도약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5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창업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6	•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7	•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8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9	• 제품화 ALL-In-One 팩	중소벤처기업부
10	•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1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12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3	•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4	•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5	•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6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7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18	•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19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	• 스포츠산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1	• 스포츠산업 (예비)선도기업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2	• (콘텐츠)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3	•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4	• (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문화체육관광부
25	•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통일부
26	• 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통일부
27	• 해양수산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28	•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산림청
29	•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30	•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평화 창업 지원사업	방위사업청
31	• 유망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상기 목록 외 중앙정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금 유형) 중복 수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전 문의 요망(02-410-1757/1753)

[붙임2] 사업화 지원금 사용가능 비목 지급기준 및 유의사항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증빙서류						
인건비	인건비	1. 운영기관과의 지원사업 협약 이후 해당 창업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신규고용 전문인력 인건비(대표자, 일반 사무행정 제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급기준(연간)</th> </tr> </thead> <tbody> <tr> <td>제조업</td> <td>법정최저~50,430천원</td> </tr> <tr> <td>스포츠 서비스업</td> <td>법정최저~42,208천원</td> </tr> <tr> <td>정보통신업</td> <td>법정최저~61,592천원</td> </tr> </tbody> </table> ※ 고용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산업별 상용임금 평균액 기준 2.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의 경우도 고용 유지 기간요건 충족 필수)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 집행 가능 3.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급여 이체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협약종료일 이후 발급), 전문인력 업무참여 내역, 이력서 등 업무관련 학위·경력 증빙서류, 급여 이체내역 <유의사항> 1. (삭제) 1. 지원금의 40% 이내 편성 제한 2. 사업협약 종료 시점까지 고용유지 시 연말 일괄 신청 및 지급 (협약종료 해당월 급여이체 완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협약종료일 이후 발급) 등 제출) 3. 창업지원사업 보육팀(기업)만 해당되며 액셀러레이터 지원기업은 집행 불가 ※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 준수	구 분	지급기준(연간)	제조업	법정최저~50,430천원	스포츠 서비스업	법정최저~42,208천원
구 분	지급기준(연간)							
제조업	법정최저~50,430천원							
스포츠 서비스업	법정최저~42,208천원							
정보통신업	법정최저~61,592천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인쇄물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의 제작비(굿즈, 전시회 기념품 등 홍보용 배포 물품 제외)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공급가액 개당 50만원 이내의 소모성 물품) 5.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감정료, 감정료, 시험/인증비, 회계검사수수료 6.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 등 전문가 자문료 * 대행수수료 집행 가능, 성공보수 집행은 불가 - 창업 아이템과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관납료 제외) 7. 광고료 : 지원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등 8.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지급수수료)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 멘토링비 집행불가 <증빙자료> (공통) 사업계획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견적서, 비교견적서 2부 이상 및 계약서(계약인 경우), 검수조서(사진포함, 50만원 이상) (지재권 등) 출원번호통지서(출원사실증명원) 등 (광고료) 결과보고서(결과물)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증빙서류
		<p>(참가비) 전시회·박람회 카달로그, 참가 확인서, 참가비 영수증, 결과보고서(행사개요, 추진성과, 사진 등)</p> <p>(시험/인증비) 계약서, 시험/인증서</p> <p>(멘토링비) (삭제)</p> <p><유의사항></p> <p>1. 지재권 등</p> <p>① 대행수수료는 집행 가능하나 성공보수 집행은 불가</p> <p>② 협약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협약 이후 출원 건에 대하여 집행 가능)</p> <p>③ 출원(등록)인은 지원기업 명의만 가능(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로 불가), 다만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로만 가능</p> <p>④ 공동출원(등록)의 경우 출원 및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비용부담</p> <p>2. 광고료</p> <p>① 광고선전을 위해 외주용역하는 경우 일반용역비 기준 준용</p> <p>② 협약기간 내 홍보, 제작 등이 완료된 건만 지출 가능</p> <p>3.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구입비</p> <p>① 공급가액 개당 5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 불가(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p>
	임차료 *지원금의 20% 이내 편성 제한	<p>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p> <p>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p> <p>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p> <p>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p> <p>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일회성 행사 등) *월렌트, 장기리스 등 집행불가</p> <p><증빙자료></p> <p>(공통) 계약서(임(전)대차계약서 또는 공유오피스 관리용역계약서 등),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전자세금계산서</p>
	교육훈련비	<p>지원기업 임직원이 사업회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p> <p><증빙자료></p> <p>교육설명자료, 교육참가 신청서(참가 전 발급), 교육자료, 영수증(입금증), 교육 이수증, 임직원 확인을 위한 4대보험가입자명부</p> <p><유의사항></p> <p>1.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부담금'은 사업비 집행 불가, 교육비 환급 과정 교육 참가 시 환급금액 제외 금액만 지급 가능</p>
	재료비	<p>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회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p> <p>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p> <p>-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p> <p>-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p> <p>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등</p> <p><증빙자료></p> <p>세금계산서, 비교견적서 2부 이상 및 계약서 (계약인 경우),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p> <p><유의사항></p>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증빙서류
		자산성을 띠는 완성품의 경우 사업화 특성상 재료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는 자산으로 취급되어 집행 불가
	일반용역비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선금집행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선금금이행보증보험 등 수취
		<유의사항> 1. 외주용역 실행 시 해당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2. 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금금, 잔금) 할 수 있으나 중도금의 경우 과업수행한 만큼의 비용 증빙(세금계산서) 필요 3. 용역파기 시 발생하는 기 지급한 선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집행 불가

※ 회의비, 여비, 자산취득비 사용불가

[붙임3] 사회적기업전담센터 특화프로그램(요약)

기관명	서원대학교		
기관형태	대학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센터유형	<input type="checkbox"/> 일반형(전국 기업 모집)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역형(비수도권 기업 50% 이상 선발)		

[기관 특장점 등 자율작성]

- 전국 유일 스포츠사회적기업 육성기관
- 창업 준비부터 창업 성장까지 창업단계별 유기적 사업 연계 운영
- 국내 최초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 '스포츠사회적기업 육성' 인증 기관
- 전국 95개 회원사를 보유한 스포츠사회적기업 협회를 통해 비즈니스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교육 프로그램]

구분	시기	주제	교육방식	비고
워크숍	4월	네트워킹 세미나	대면	필수참여
필수교육	5월	사회적기업가정신	대면	필수참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전략		
		사회적가치지표(SVI) 교육		
		선배기업과의 만남		
AI x 사회적기업 임팩트 부스터	5월	4과목 개설, 1멘토링	대면/비대면	필수참여
맞춤형 교육	5~6월	선택 4과목 개설	대면/비대면	필수참여
워크숍	9월	밋업 워크숍	대면	필수참여
비즈니스 컨퍼런스	11월	IR 투자유치, 기업 홍보부스 운영, 성과공유회	대면	필수참여

[보육 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특화성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VM 특화 창업 교육(4~10월) :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 AI x 사회적기업 임팩트 부스터(4~5월) : AI 활용 역량 강화 ○ 스포츠사회적기업 임팩트 밸류업(5월/11월) : 사회적가치 측정
사회적기업 인·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업 x 10소셜멘토링(4~11월) : 사회적기업 인·지정 ○ IP 챔피언 메이커(4~11월) : 1기업 x 1특허 ○ 소셜벤처 브릿지(5~12월) : 중기부 소셜벤처 인증
플랫폼 구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컨퍼런스(11월) : IR 투자유치, 기업 홍보부스 운영, 성과 공유 ○ 스포츠사회적기업협회 네트워킹(4월/9월) : 네트워킹 세미나, 밋업 워크숍 ○ 스포츠사회적기업연구소 이슈보고서 발행(4~12월 매주)
지속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하이닉스 청년창업파크 도약 패키지(12월 이후) : 스파크 창업사업 연계 후속지원 ○ 소셜 브랜딩 파워업(4~11월) : 1기업 x 1언론 홍보 지원 ○ 지속 사후관리 : DB아카이빙, 정기적 모니터링, 스포츠사회적기업 협회 연계사업 지원